

#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P
------	-----

제출년월일 : 2006. 3. 20

제 출 자 : 고성군 수

## 1. 개정이유

- 가. 2005.11.15. 제1종박물관 등록으로 인하여 고성공룡박물관으로 명칭변경 필요  
나.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우수한 박물관자료의 수집방법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을 조례에 명문화(안 제6조)  
다. 유아 입장료 징수(안 제8조)  
라.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보강(안 제15조)  
마. 전시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강(안 제16조)  
바. 전시물의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1조)  
사. 영상실의 운영 사항 신설(안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105호(2006.2.13~3.4 20일간)  
→ 의견 제출사항 없음  
나. 관계법령 및 근거  
-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5. 본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공룡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를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공룡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85번지(군립공원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①군수는 박물관 보호 및 전시물을 유지 관리 한다

②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박물관 보호 및 전시물을 관리·운영 한다.

③관리자는 박물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박물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1과 같다.

③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람료 징수 등)** ①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한다.(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  
(단, 관람권의 회수권을 회수하기 전일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④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를 징수 할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 경로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소지자(1~3급 보호자1인 포함)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람요금의 게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금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취한 자
3. 정신이상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5.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행위의 금지)** ①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5.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고성공룡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부군수와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자연사와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⑩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⑪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전시물평가위원회)** ①전시물의 구입 또는 기증대상 전시물의 평가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 및 가격 평가

- 2. 취득대상 전시물의 전시·학술적 가치 및 구입 여부
- 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전시물의 구입)** ①군수가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과 유물, 기타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대상 전시물과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전시물 구입과 관련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의 전시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시물의 기증)** ①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전시물의 기증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전시물의 관리)** ①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전시물의 대여 등)** ①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시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 2. 교육기관의 박물관
-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시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전시물의 명칭 및 수량
-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 3. 대여 받은 전시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전시물의 보호관리방법

5. 대여 받은 전시물의 운반방법

④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당해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을 대여 받아 대여목적에 맞게 전시, 연구 기타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명예관장)** ①군수는 자연사 및 박물관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관장은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제23조(영상실 운영)** ①군수는 박물관 내에 영상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영상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군수는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랑 료(제8조 제2항 관련)

< 단위 : 원 >

구 분	관 랑 요 금		비 고
	개 인	단체(30인 이상)	
어린이	1,500	1,000	
청소년, 군인	2,000	1,500	
어 른	3,000	2,500	

-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 및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생을 말한다.
- ※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을 말한다.
- ※ 어른이라 함은 만3세 미만의 자,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 호

## 기 증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고성공룡박물관에 기증한 000등 00점의 전시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